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7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정태호·손명수·이학영

박민규 • 안호영 • 조정식

정준호 • 최기상 • 김주영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

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 100조의35, 제127조제12항 및 제1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이하 "국가전략기술재화"라 한다)를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 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출고가격의 최대 100분의 10 이내 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가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 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1. 반도체 관련 재화: 100분의 10
- 2. 이차전지 관련 재화: 100분의 10
- 3. 백신 관련 재화: 100분의 10
- 4. 디스플레이 관련 재화: 100분의 10

- 5. 청정수소 관련 재화: 100분의 10
- 6.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관련 재화: 100분의 10
- 7. 바이오의약품 관련 재화: 100분의 10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관련 재화: 100분의 10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재화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2.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3.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 4.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생산 수량의 산정,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 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에 따라 소득 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없거나"를 "없거나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 조의35"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 ① 제100조의 35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과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에 소재할 것
 - 2.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에 연속하여 「소득세법」 제19 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내국인이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 그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미공제금액에서 제외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액의 계산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 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 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 재화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이
	하 "국가전략기술재화"라 한다)
	를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출고가격의 최대 100분의 10
	이내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하
	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
	화가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
	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

- <u>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u> 한도로 한다.
- 1. 반도체 관련 재화: 100분의10
- 2. 이차전지 관련 재화: 100분 의 10
- 3. 백신 관련 재화: 100분의 10
- 4. 디스플레이 관련 재화: 100 분의 10
- 5. 청정수소 관련 재화: 100분 의 10
- 6. 미래형 이동 수단 관련 재화: 100분의 10
- 7. 바이오의약품 관련 재화: 10 0분의 10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술 관련 재화: 100분의 10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재화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만 적용한다.
- 1.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2.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3.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 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u>것</u>

- 4.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 ·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생산수량의 산정, 국가전략기술재화의 의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현행과 같음)
 -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생 략) <신 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①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u>제99조의12</u> , 제104조의5, 제104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u>없거나</u> 제13	<u>없</u>
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거나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
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	또는
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	

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 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 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u>의12</u>,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 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 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②
제99조
의12, 제100조의35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면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공제하다.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 ① 제 100조의35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하여 공제를받은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과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1.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할것
- 2.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에 연속하여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내국인이 제1항에 따라 미 공제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미공제금액에 서 제외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

 용할
 때
 환급액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